

서 면 질 문 서

질문의원명	김 정 량	소속위원회	도 시 위 원 회
질문대상자	구 청 장		

우리구 소규모 편익사업 등 구정 업무와 관련하여 서면질문 하고자 합니다.

1.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 집행내역 (최근 3년)
2. 어업지도선 관련 사항
 - 어업지도선 승선원 당직비 (최근 3년)
 - 어업지도선 유류구입 및 폐유처리 내역 (최근 3년)
 - 어업지도선 수리비 (최근 5년)
3. 낚시어선 안내표지판 관련 사항
 - 안내 표지판 부착(게시) 장소 및 집행 내역 (2007년도)
 - ▶ 집행내역 영수증 등 사본 첨부
4.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관련 사항
 -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내역 (2007년도)
5. 행정소송 관련 사항
 - 행정소송 승소 및 패소 내역 (최근 3년)
6. 다대 롯데 캐슬 아파트 및 STX 기부 채납 관련 사항
 - 기부채납 물건의 표시
 - 기부자의 성명, 상호, 주소
 - 기부의 목적
 - 가격

서 면 답 변 서

질문의원명	김정량 의원	질문일자	2008. 9.
-------	--------	------	----------

1.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집행 내역 (최근3년) ▷ 별첨참조

2. 어업지도선 관련사항

○ 어업지도선 승선원 당직비 (최근3년)

구분	예산액	집행액	비고
2005년	15,480천원	15,480천원	어업지도선 승무원 일직 숙직비
2006년	16,870천원	16,870천원	
2007년	16,870천원	16,870천원	

○ 어업지도선 유류구입 및 폐유처리 내역(최근3년)

구분	유류구입		폐유처리비	
	유류예산액	유류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2005년	15,000천원	15,000천원	640천원	570천원
2006년	16,725천원	16,725천원	640천원	미집행
2007년	18,450천원	18,450천원	640천원	570천원

○ 어업지도선 수리비 (최근5년)

구분	예산액	집행액	비고
2004년	42,390천원	42,390천원	어업지도선 5년한번 실시하는 정기검사
2005년	24,598천원	14,509천원	어업지도선 매년 중간검사
2006년	24,598천원	19,350천원	어업지도선 매년 중간검사
2007년	24,598천원	19,481천원	어업지도선 매년 중간검사
2008년	24,598천원	18,370천원	어업지도선 매년 중간검사

3. 낚시어선 안내표지판 관련사항

- 2007년도 낚시어선 안내표지판 관련사항
 - 예산액 : 6,000천원, 집행액 : 4,532천원
- 안내표지판 신설 및 보수 개소
 - 보수개소 : 5개소(성창부두2, 낮개선착장1, 다대항1, 장림선착장1)
 - 신설개소 : 8개소(다대항1, 남형제도2, 북형제도2, 목도1, 서도1, 경도

1)

※ 관련 영수증 등 사본 첨부(별첨)

4.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관련사항

-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내역(2007년도)
 - 사업개요
 - 사업비 : 14,000천원(국9,800 시 2,100 구2,100)
 - 방류품종 : 참돔
 - 수산종묘 매입 · 방류 실적
 - 2007.4.19. : 보조금(국 · 시비)교부결정 및 배정
 - 2007.5.09. : 방류장소 및 방류품종 결정(사하구 수산조정위원회)
 - 2007.5.29. : 전자입찰에 의한 종묘납품(생산) 낙찰자 결정 및 낙찰업체에 대한 사전현지조사 실시, 납품대상 종묘에 대한 질병검사 의뢰
 - 2007.5.31. : 종묘 검사 결과 통보 및 계약요구
 - 2007.6.04. : 종묘매입 계약
 - 계약자 : 세보수산(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134번지) 대표 나해춘
 - 참돔 단가 : 미당 176.5원
 - 2007.6.13. : 방류(참돔 79,321미)
 - 방류위치 : 다대동(물운대 ~다대포 해수욕장)지선 해역

5. 행정소송 승소 및 패소 내역(2006년 ~ 2008년 8월)

<2006년도>

연번	사건번호 및 사건명	사건개요	선고일 및 판결결과	관려 부서
1	2006구합195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반려(취소)처분취소 등 (원고:김미희)	원고가 사하구 괴정동 740-1에 시설한 지하수 시설에 대하여 개발·이용 신고 당시 허위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5. 11. 1. 이 사건 반려(취소)처분을 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함	2007. 3. 12. 원고 소취하	도시개발과
2	2006구합485 취득세등부과 처분취소 (원고:신부국 건설) ○ 항소심 2006누3469 ○ 상고심 2007두16417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3 제1항에서 '취득시점 이후의 약정된 비용'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사회결의에 의해 결정된 양도소득세 등 대납분은 취득세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해야 함.	2006. 7. 13 원고일부승소 ○ 항소심 2007. 6. 29 원고패소 ○ 상고심 2007. 9. 12 상고이유서불제출기각	세무과
3	2006구단495 영업정지처분 취소 (원고:박성호)	원고 영업장에 설치된 게임기(battle start2)의 모니터에 전자못이 33개가 나타나야 하는데 26개만 나타나므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설치·영업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함.	2007. 1. 18 원고소취하	문화관광과
4.	2006구합638 과태료부과 처분취소 (원고:전용환)	원고가 시공한 연립주택 단독정화조에서 배출되는 오수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하여 단속된 것과 관련하여 이는 시공의 잘못이 아니라 미생물이 살지 못하도록 염산 등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사용자의 잘못이므로 과태료를 원고에게 부과하는 것은 위법함.	2006. 6. 29 원고청구각하	청소행정과

14	2006구합2191 취득세등부과 처분취소 (원고:김재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제273조의2 소정의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2006.9.21 원고패	세 무 과
15	2006구단2194 영업정지처분 취소 (원고:박상혁)	하단2동 511-23 소재 '마포통연탄구이'를 운영하는 원고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로 단속되었으며,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으로 소를 제기함.	2006.12.20 원고패	환 경 위 생 과
16	2006구단1634 게임장영업정 지처분취소 (원고:김영진)	원고는 다대동 63-15 소재 '바다이야기' 게임장을 운영하 자로, 2006. 4. 12. 12:50경 '음비법' 제32조 제3호에 의거 적법하게 지정·고시되지 않은 경품용 상품권을 게임기에 비치하여 영업하던 중 단속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주장으로 소를 제기함.	2007.4.6 소취하	문 화 관 광 과
17	2006구합2597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불가 처분취소 (원고:윤영준)	원고가 사하구 당리동 산89-3번지 임야 76,667㎡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구청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불가처분함.	2006.12.28 원고패	도 새 개 발 과
18	2006구단2491 법규위반업소 행정처분취소 (원고:남철진)	원고가 위 오락실에서 예그린문화상품권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상기 처분을 하자, 이 사건 처분은 법적인 근거 없이 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소를 제기함.	2007.5.25 원고소취하	문 화 관 광 과
19	2006구단2545 영업정지처분 취소 (원고:한영도)	원고가 업소에서 제공한 영상물을 음란물이 아니라 미성년자 관람불가 정도의 것이고, 손님 또한 성년이 넘었고, 신분확인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2006.9.12 원고 소취하	문 화 관 광 과

20	2006구합2955 건축허가취소거부처분취소 (원고:광진실업)	소외 이좋은집건설(주)는 사하구 신평동 370-106 지상에 지하2층 지상8층 복합건물 신축허가를 받았으나, 공사 시행 초기에 공사가 중단 되었고, 원고는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창고를 건축하려고 하나, 기존 소외 이좋은집건설(주)가 득한 건축 허가로서 인하여 원고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기존 소외 이좋은집건설(주)가 득한 건축허가 취소를 요구하였으나 피고구청이 거부 처분함.	2006.11.17 원고소취하	건축과
21	2006구합3187 담배소매인지정취소 (원고:이혜경)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공개추첨을 하기로 하였으나, 원고가 추첨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8분 늦었다는 이유로 공개추첨을 하지 않고 담배소매인을 지정한 것은 중대한 오류이고, 재공고의 절차를 거쳐야 함.	2006.7.1.18 원고패	지역경제과
22	2006구합3422 계고처분취소 (원고:사하직장협의회)	피고가 원고와 합의하여 제공한 사무실을 아무런 근거없이 폐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 내지 자기구속의 원리에 배치되는 처분임.	2006.12.14 원고소취하	총무/재무과
23	2006구합344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박영근)	아파트 분양대금에 이미 토지매입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시가표준액에 미달되지 않고, 또한 입주자 대표회의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므로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법인간 거래에 해당되어 실제취득가액에 의하여야 함.	2007.2.15 원고패	세무과

24	2006구단3340 영업정지처분 취소 (원고:박상조)	원고가 업소내 게임기의 아이오(I/O)보드 부품의 추가설치와 아이템벨트 장애편이 심의 당시와 다르게 설치된 게임기를 제공하다 음비법 제21조 제1항 위반으로 사하경찰서 단속반에 적발되어 영업정지처분을 받음.	2007.6.29 원고 소취하	문화관 광과
25	2006구합4111 조업정지 및 경고처분취소 (원고:대성양)	원고는 구평동 112-3에서 수산물을 제조·가공하는 업체로 2006. 9. 4과 9. 5.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배출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합동단속반에 적발되어,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소를 제기함.	2007.9.13 원고패	환경위 생과
26	2006구단4176 영업정지처분 취소 (원고:박명자)	신평동 606-7 소재 부킹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원고는 2006. 8. 미상일에 주류판매 및 도우미알선으로 단속되었으나 주류판매는 인정하나 우미를 제공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2007.5.30 원고패	문화관 광과

<2007년도 행정소송>				
1	2007구합55호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신청 거부처분취소 (원고:(주)알앤 드디이)	원고가 사하구 장림동 62-4외 2필지 상에 266세대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경사도·임상 양호·진입로 교통사정 등을 이유로 승인불가 처분을 하였음.	2007.3.28 원고소취하	건축/ 도시개발 과
2	2007구단3555 영업정지처분 취소 (원고:박명자)	2006년 주류판매 및 도우미알선으로 처분받아 소송을 하고 있으므로 소 송결과에 따라 주류판매 1차 내지는 2차가 결정되므로 소송이 종결되기 전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2007.7.25 원고패	문화관광 과
3	2007구합1003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취 소처분취소 (원고:정경희)	하자 있는 측량도면으로 허가신청 서를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건축허 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음	2008.11.1 원고승 ▷하자 있는 측량도 면이 검찰에서 무협 의 결정이 낳고, 쟁 점이 된 경사도 측 정기준 또한 전체면 적에서 비교해 볼 때 2~3%에 불가하 며, 사업부지 공사 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되어 원상회복 이 불가능하며, 원 고 또한 손해가 크 다는 점 등 ※항소진행중	건축/ 도시개발 과
4	2007구합1034 폐기물적정처 리명령처분취 소 (원고:서봉리사 이클링)	원고가 부지내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사실이 적발되어 허가취소전 폐기물 적정처리명령을 하자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2008.4.17 원고승 ▷적발된 폐기물의 면적과 양이 회사 의 규모, 폐기물처 리능력 처리량에 비해 상당히 경미 한 점을 볼 때 재 량권 알탈 남용 ※항소진행중	청소행정 과

5	2007구합1249 경고처분취소 (원고:양경의료재단)	감천동 중앙U병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병원내 물리치료실과 시체안치실 일부를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장례식장으로 운영하다 적발되어 1차 경고처분을 받자, 의료법 제30조제6항을 위배하지 않았고,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함	2007.11.1 원고패	보건행정과
6	2007구합1690 도시관리계획결정주민제안거부처분취소 (원고:박차암) ○항소심 2008누1054	원고가 2006. 3 20경 원고 소유인 구평동 산17-6일대에 자동차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의 설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나 보전녹지지역 등을 이유로 거부처분하였음.	2008.2.14 원고패 ○항소심 2008.7.1 원고패	도시개발과
7	2007구합1720 공사중지명령취소 (원고:광진실업)	피고가 2007. 4. 10. 원고 인근 주민들의 공장증설 반대민원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하였음.	2007.6.13 원고 소취하	건축과
8	2007구단1303 영업정지처분취소 (원고:장태석)	원고는 주류판매 및 도우미 알선, 주류보관을 단속되어 행정처분토록 피고에게 통보되어 행정처분 받았지만, 이에 원고는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소를 제기함	2007.9.5 원고패	문화관광과
9	2007구합190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이성철)	원고가 구평동 117-7 토지와 건물을 전소유자로부터 취득하고 취득세등을 납부하였으나, 전소유자가 연대보증으로 대출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원고와 전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판결을 받아 제3자에게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이 사건 취득세등도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임	2007.12.27 원고청구각하	세무과

10	2007구합1959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취소 (원고:양경의료 재단)	원고가 운영하는 중앙U병원 지하1,2층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이는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69조의2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음.	2008.1.24 원고패	건축과
11	2007구합1997 건축허가취소 처분취소 (원고:김중석)	원고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건축주명의변경금지 가처분결정을 받아, 구청에 내용증명으로 송달하였음에도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동지상에 새로이 건축허가를 한 것은 위법함.	2007.11.29 원고청구각하	건축과
12	2007구합2112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원고:양경의료재 단)	감천동 713-5에서 중앙U병원을 운영하는 원고는 종합병원 허가시 지하1,2층을 의료시설(병원)으로 허가 받았으나, 이후 장례식장을 설치하고 시체안치실을 713-11로 허가없이 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고처분을 받고 시정되지 않아 업무정지 1월의 처분을 받았으며, 업무정지 1월에 같은 과징금 처분을 하였음.	200832.14 원고패	보건 행정 과
13	2007구단1945 영업정지 처분취소 (원고:김주신)	당리동 326-17 소재 '산내가'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원고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영업정지 1월로 감경되었으나, 다시 소를 제기하였음.	2007.10.24 원고패	환경 위 생 과
14	2007구합2280 재산세부과 처분취소 (원고:최춘자)	원고 남편은 2004. 4. 13. 사망하였고, 소송을 통해 그 재산의 일부만을 상속 받은 원고에 대해 재산세 전부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상속받은 지부만큼만 부과하여야 할 것임	20071213 원고소취하	세무과
15	2007구단2160	원고는 신평동 41-2에서 상운식품이	2007.11.28.	환경 위 생

	제조정지 처분취소 (원고:황애봉)	라는 김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원고업체에서 생산된 '봉오리 포기 김치' 울산시 동구청에서 수거하여 성분검사한 결과 납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우리구에 통보되었으며, 이 사건 처분을 하자 소를 제기함.	원고패	과
16	2007구합2563 이행강제금부과 처분무효확인 (원고:감천2동 새마을금고)	감천동 12-247번지상의 무허가건물에 이행강제금(2003년 ~ 2006년)을 부과하자 원고는 건물소유주도 아니고 관리인도 아니므로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임	2008.5.22 원고일부승소 ▷2005년 이전 이행강제금은 비송 사건절차법에 따르도록하고 있어 각 하 되었으며, 2006년 이행강제금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아닌 자에게 부과한 것으로 판단함	건축과
17	2007구합2679 취득세등부과 처분취소 (원고:양경의료 재단)	원고는 감천동 소재 중앙U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종합병원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취득세 등이 면제되었으나 지하 1,2층을 병원시설이 아닌 장례식장으로 사용함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임.	2008.4.3 원고패	세무과
18	2007구단2603 영업정지 처분취소 (원고:김주영)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판매사실이 없고, 처분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함.	2007.10.31 원고소취하	지역경제 과
19	2007구합3412 취득세등부과처 분취소 (원고:세인트폴 홀딩스)	원고가 인수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부산시 세무조사 결과 취득세가 과소 신고된 사실과 비과세 대상인 등록세과 과세대상인을 확인하고 부과함에 따라 소를 제기함	소송진행중	세무과
20	2007구단3187	주류판매 도우미알선으로 단속되	2008.1.23	문화관광

	영업정지 처분취소 (원고:정연근)	였으나 손님이 불법행위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 정황을 고려하지 않고 한 이 사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으로 소를 제기함.	원고패	과
21	2007구합3894 주택건설사업계 획변경승인신청 반려처분취소 (원고:(주)세움)	소의 투원하우징이 당리동 26-41 지상에 득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원고가 사업주체 변경을 구하는 변경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구청에서는 투원하우징의 현대표자의 동의서와 사업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한을 입증할 자료가 없어 반려 처분함.	2008.7.17 원고패	건축과
22	2007구합3795 취득세부과 처분취소 (원고:최춘자)	상속에 대한 법원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법원의 보증명령으로 경매의 전단계로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2008.6.12 원고패	세무과
23	2007구합3924 취득세부과 처분취소 (원고:김종선)	상속에 대한 법원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법원의 보증명령으로 경매의 전단계로 형식적인 소유권을 이전한 것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2008.6.12 원고패	세무과
24	207구단3453 영업정지 처분취소 (원고:이기호)	2007. 6. 19.자 행정처분은 처분서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고, 영업정지 중 영업행위가 아니므로 8. 27.자 처분 또한 위법하다는 주장함.	2008.5.14 원고일부승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부에 있어서는 그 처분서가 송달하였어야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선행처분을 처분사유와 처분내용 등이 기재된 서면이 송달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선행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환경위생과
25	2007구단3606	보도방을 통해 청소년을 유혹접	소진행중	환경위생과

	영업허가처분 취소처분 (원고:김남진 외3)	객업으로 고용하여 영업허가처분 취소 처분을 받음		
26	2007.구합4422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취소 (원고:송국자)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무단용도변 경한 사실이 적발되어 이행강제 금을 부과함	2008.8.21 원고청구각하	교통행정과
27	2007구단3842 영업허가처분 취소처분 (원고:김영심)	보도방을 통해 청소년을 유흥집 객업으로 고용하여 영업허가처분 취소 처분을 받음	소송진행중	환경위생과
28	2007구단3880 영업허가처분 취소처분 (원고:김정균)	보도방을 통해 청소년을 유흥집 객업으로 고용하여 영업허가처분 취소 처분을 받음	2008.6.20 원고소취하	환경위생과
29	2007구단3910 영업허가처분 취소처분 (원고:조정순)	보도방을 통해 청소년을 유흥집 객업으로 고용하여 영업허가처분 취소 처분을 받음	소송진행중	환경위생과
30	2007구단3958 영업정지 처분취소 (원고:장두성)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 를 판매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자 소를 제기함	2008.5.21 원고패	환경위생과

<2008년도>

1	2007구단147 영업정지 처분취소 (원고:(주)효강산업)	골재채취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규정한 등록변경사항 신고의무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이에 대해 소를 제기함	2008.6.11 원고패	건설과
2	2008구합250 수질초과배출부과 금부과처분취소 (원고:부산신평장 림피혁공업사업 협동조합)	피혁조합의 개선기간중에 배출한 오염물질이 허용기준농도를 초과함에 따라 부과금 부과	소송진행중	환경위생과
3	2008구단819 영업정지 처분취소 (원고:손민희)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에 손님에게 주류 제공과 도우미 알선하여 피고에게 행정처분 받았으나, 원고는 피고의 절차법상의 위법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소송진행중	문화관광과
4	2008구합1239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원고:임승여 외 1)	원고가 주유소 및 소매점 건축을 위한 건축허가신청을 제출했으나 피고가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반영과 지역주민의 반대민원과 사하구 장기발전계획에 부합하는 건축물 입지 등을 근거로 불허가 함	소진행중	건축과
5	2008구합1352 과징금부과 처분취소 (원고:광신석유 주식회사)	원고의 직영주유소내의 이동판매차량에서 재취한 경유에 등유가 15%가 혼합되어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됨에 따라 피고가 과징금을 부과하였지만 피고는 이동판매차량의 구조적인 문제로 우연히 섞였을 뿐이라며 소를 제기함	2008.8.27 원고소취하	지역경제과

6	2008구합1635 권고처분 무효확인등 (원고:신세대건설주식회사)	원고가 임대조건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피고가 관련규정에 따라 조정을 권고함에 따라 피고가 이에 대해 소를 제기함.	소진행중	건축과
7	2008구합1734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취소 (원고:한국종합기계)	원고는 신축한 건물에 사용 승인을 득하지 않고 사전에 입주하여 사용 중인 바 피고는 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시정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였으나, 원고는 건물 일부에 대한 사용을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2008.9.11 원고패	건축과
8	2008구단1393 영업정지 처분취소 (원고:배광애)	원고는 2008. 3. 15.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2번룸에서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사하경찰서에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음	2008.8.20 원고패	문화관광과
9	2008구합2034 재건축관리처분계획인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원고:신동야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오주영)	원고가 재건축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12. 3 원고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 절차 및 조합설립 미동의자 소유권확보 절차, 아파트단지 외부 상가 소유자등과 협의매수 및 사업시행인가 조건 등을 각각 미이행 한 이유로 반려 처분	소진행중	건축과
10	2008구단1720 영업소폐쇄 처분취소 (원고:전숙희)	원고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였고 고용한 청소년을 유흥집객행위를 하게하여 사하경찰서에 적발됨	소진행중	환경위생과

<p>11</p>	<p>2008구합2164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원고:뉴코아)</p>	<p>원고의 건축허가에 피고는 건축허가 신청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조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피정4 주택재개발정비예정 구역에 포함된 부지로 현재 피고가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절차이행 중에 있고, 신청지는 현재 노외주차장으로 사용 중에 있어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할 경우 토지이용에 지장이 적은 반면 건축허가를 할 경우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어 건축불허가 처분 함</p>	<p>소진행중</p>	<p>건축과</p>
<p>12</p>	<p>2008구합2263 건축불허가 처분취소 (원고:박효섭)</p>	<p>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허가신청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결과 신청지에 대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시에는 대상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등산로 단절과, 진입도로 경사도 28% 급경사지의 공사용 차량과 이용차량 진·출입시 안전사고 우려 및 임상양호한 지역내 녹지 훼손, 주변환경저해, 생활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불허 및 건축허가 불허함</p>	<p>소진행중</p>	<p>건축과</p>
<p>13</p>	<p>2008구합1959 영업정지 처분취소 (원고:장정순)</p>	<p>원고는 2008.4.11.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주류와 도우미를 알선하여 사하경찰서에 단속되어 관련규정에 의해 처분됨</p>	<p>소진행중</p>	<p>문화관광과</p>

6. 다대 롯데캐슬아파트 및 STX 기부 채납 관련 사항

(기부채납 물건의 표시, 기부자의 성명, 상호, 주소, 기부목적, 가격)

○ 다대 롯데캐슬아파트

- 기부채납 물건의 표시 : 사하구 다대동 933-8 대 1,720.5m²
- 기부자의 성명, 상호, 주소
 - 성명 : 이창배 ▶ 대표이사
 - 상호 : 롯데건설주식회사
 - 주소 : 서울 서초구 잠원동 50-2
- 기부의 목적 : 노인정 등 공공시설 목적으로 사용
- 가격 : 1,462,425천원(2008년도 공시지가 기준)

○ STX 기부채납

《승학경로당》

- 기부채납 물건의 표시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당리동 349-29번지
 - ▷ 대지 124.30m², 건물 연면적 127.86m²
- 기부자의 상호, 성명, 주소
 - 상 호 : STX조선(주)
 - 성 명 : 대표이사 정 광 석
 - 주 소 : 경상남도 진해시 원포동 100번지
- 기부의 목적 :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노인여가·취미 공간으로 활용토록 제공함
- 가 격
 - 부동산가액 : 금 삼억일천일백오십칠만칠천일백칠십삼원(₩311,577,173)

《감천2동 다목적 복지센터》

- '08. 5. 6 현재 STX조선과 양해각서만 체결한 상태이며 기부채납은 감천2동 다목적복지센터가 준공되고 나면 기부채납 받을 예정임

- 감천2동 다목적복지센터 건립관련 추진 사항
 - 2007. 7. 23 : 양해각서 체결
 - " 11월 : 다목적복지센터 건립부지 선정(감천2동)
 - 2008. 4월 : 건립 대상지내 부지매입 완료
 - " 8월 : 건립 대상지내 공유필지 분할 및 등기 완료
 - " 9월 : 감천1구역 주거환경개선계획 (경미한)변경 고시문 공고
 - " 10월 : 공사착공(예정)
 - 2009. 3월 : 준공(예정) 및 기부채납